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0. 24.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출일자: 2023년 10월 10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10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가. 제안이유

-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3조)
- 위험수목에 대한 지원계획, 지원대상지(안 제4조~제5조)
- 위험수목 처리지원, 실태조사, 지원신청 등(안 제6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경진)

○ 본 조례안은

-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고 8개의 본칙 조문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및 소유자등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지로 주택·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규정하되,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원 제외 대상지로는 산림 및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처리지원 수목으로 가슴높이지름20cm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또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으로 명시하면서도 제3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소유자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및 수목전문가에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 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폭우와 태풍 등으로 쓰러짐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제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243 호
----------	---------

제출연월일: 2023. 10.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3조)
- 나. 위험수목에 대한 지원계획, 지원대상지(안 제4조~제5조)
- 다. 위험수목 처리지원, 실태조사, 지원신청 등(안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3. 8. 31.~9. 20./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대상지로 선정한다.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필수 :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노유자시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건물명)		(전화:)						
신청 사항	위치		신청인 주소와 같음.						
	위험수목 현황		수종		규격		수량	주	
								주	
								주	
	정비 방법	제거	수종		규격		수량	주	
								주	
								주	
		전지	수종		규격		수량	주	
								주	
								주	
정비사유									
대체수목 식재계획			- 식재수종 : - 수목규격 : - 식재수량 : - 식재(예정)일 :						
※ “대체수목 식재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대체수목 식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태풍 및 강풍 시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1부.									
3.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 1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협수목 정비 동의서

- 수목위치:
- 수종 및 수량:
- 정비사유:
- 정비내용:

상기 본인은 영등포구 소유주로 여름철 태풍, 폭우 시 전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수목에 대하여 정비(제거, 가지치기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소유자: (인)

(연락처:)

붙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공동소유자 동의서

☐ **민원인(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비고

☐ **공동소유자 동의(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연번	세대주	주소	서명(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상기와 같이 사유지내 위험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에 대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민원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

- 식재(예정)일 :
- 수종 및 규격 :
- 수 량 :

본인은 해당 공동주택 세대원을 대표하여 위험수목으로 제거되는 수목의 수량만큼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의 『대체수목 식재계획』에 의한 수목을 식재하겠으며, 위험수목 제거 후 대체수목 식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 등의 행정처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택 명)

연락처(H.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